

주식회사 누리펀딩대부는 근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대부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

**근 보증**

팀원	팀장	본부장

근 보증서

★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“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”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,  
 ★ 붉은선  으로 표시된(당사자란, 제1조 및 계약서 끝 부분)은 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주식회사 누리펀딩대부 앞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연대보증인 \_\_\_\_\_  
 주    소 \_\_\_\_\_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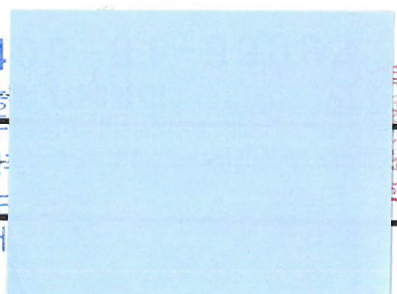


연대보증인(이하“보증인”이라 합니다)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누리펀딩대부(이하 “누리펀딩대부”이라 합니다)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,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누리펀딩대부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아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.

**제 1 조 보증채무의 내용**

① 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

1. 채무자: 성 명 : \_\_\_\_\_  
 주 소 : \_\_\_\_\_



**2. 피보증채무의 범위**

피보증채무의 범위는 다음의 **특정근보증**에서 정한 채무(이자,지연배당금,기타 부채채무를 포함합니다)를 보증하기로 합니다.

**특정근보증**

채무자가 누리펀딩대부(본·지점)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채무(아래 약정의 상환기일 또는 거래기간을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한 때에는 그 채무 포함)

년    월    일자      약정서  
 년    월    일자      약정서